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최 선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북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협약서가 공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